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산처분계획서의 이사회 의결 및 국회 보고 등〉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82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자산처분계획서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국회 상임위 보고 및 동의 (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39조의3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영교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4. 8. 1.

다. 회 부 일 : 2024. 8.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여러 공공기관이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산 매각은 공공기관의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매각 과정에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여 그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산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39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자산처분계획서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국회 상임위 보고 및 동의 (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39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결산 -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신 설) -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 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채무보증 등 - 정관, 내규 변경 및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처분계획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자산 처분시 처분계획서 작성 및 소속 장관과 국회 상임위 보고 등 -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 자산 처분 시 처분 필요성, 처분하려는 자산의 규모·명세, 가액을 담은 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의결 - 처분계획서는 이사회 의결을 받은 후 기획재정부 장관·주무기관의 장의 승인 필요 - 기획재정부 장관·주무기관의 장은 승인한 처분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처분계획서상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산 처분 전 처분계획서에 대한 국회 상임위 동의 필요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주무기관의 장은 승인한 처분계획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공공기관이 처분하려는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을 처분하기 전 처분계획서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2022. 7. 29.)를 열어 공공기관의 비효율화 및 방만경영을 개선하고자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로 3대 과제를 선정하고, 각 기관별 기능, 조직, 예산, 자산, 복리후생 5대 분야에 대하여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자산 정비’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및 과도한 청사·사무실 등을 정비하도록 상세히 정하였음¹⁾.

1) [참고1.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중 자산정비 관련 부분] 참조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① (목적)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각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제시
 * 공운법 제15조 및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8조에 근거
- ② (대상기관) 전체 공공기관(350개)
- ③ (추진방향) 5대 분야 중점 효율화
- (기능) ①민간·지자체 경합 기능 → 축소, ②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기능 → 축소, ③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 일원화(통폐합) 및 축소
 - (조직·인력)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고, 정·현원차 최소화,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을 통해 비대한 조직·인력을 슬림화
 - (예산)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보수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
 - (자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과도한 청사·사무실 등을 정비** (상세 자료는 [참고1] 참조)
 - (복리후생)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자료: 기획재정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2022. 7. 29.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은 중요 자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할 우려가 크고, 공공기관의 자산 감소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자산 매각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 기반 악화로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2022년 국정감사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²⁾에서 수차례 제기되었음.³⁾

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00회 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2. 11.18) 등

3) 데일리한국, “주철현 의원, 우량 자산 졸속 매각 피해는 국민 몫...재검토해야”

URL: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82840>

“공기업의 자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인 것인데 국민의 재산을 매각을 할 때 그러면 그 일종에 헐값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것”

자료: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조승래 “공공기관 헐값 매각 논란, 심지어 2007년 가격 제시”, 2022. 10. 04

URL: <https://www.nocutnews.co.kr/news/5826788>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에 대한 처분계획서 작성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의결된 처분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으며, 각 주무기관의 장이 그 처분계획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절차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둘째, 개정안은 자산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산 처분 전 처분계획서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 보유 자산 매각의 타당성·적절성과 공공서비스의 품질 약화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논의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자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반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첫째, 현행법에서도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⁴⁾,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주권 등 자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이사회 설치와 기능) ①공기업·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 5. 17.>

1.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이하 생략)

매각을 포함한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산 처분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각종 연구회 등 자산기반이 영세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적용이 필요한지와 처분계획서 작성 대상의 “자산”을 금액 또는 동산·부동산 기준 없이 모든 자산에 동일하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한편,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상 각 공공기관은 자율·책임 경영 원칙에 따라 경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⁶⁾, 공공기관의 자산처분 계획을 국회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6. 12. 27.>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2020. 3. 31.>

③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그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전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할 경우,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서영교 의원안(의안번호 2118135)과 유사한 취지의 박영순 의원안(의안번호 2117609)⁷⁾과 김희재 의원안(의안번호 19384)⁸⁾이 제출되어 경제재정소위⁹⁾에서 논의되었는바,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입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공공기관의 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 국회 동의를 거침으로써 매각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임기만으로 폐기되었음.

7) 공공기관(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산의 처분계획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각 주무기관의 장은 수립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8)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등)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처분하려는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필요

9)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2. 12. 5)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 4. (생략) <신설> 5. ~ 14. (생략) ② · ③ (생략) <신설>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39조의3에 따른 처분계획서 5. ~ 1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처분계획서의 작성 등) ① <u>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처분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1. 처분의 필요성 2. 처분하려는 자산의 규모와 명세 3. 처분하려는 자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라 작성·제출된 처분계획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승인한 처분계획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처분계획서에 따라 처분하려는 자산의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처분계획서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서의 작성 방법, 자산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148

참고 1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중 자산정비 관련 부분

4

[자산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은 기관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

1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① 기관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 기관의 설립 근거 법령 또는 정관상의 명시적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

②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 등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

* (예)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등

③ 사업계획 변경·지연 등으로 2년 이상 미사용 중인 유휴자

* (예)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미사용 중인 유휴 토지, 기계, 설비, 자재 등

④ 운영기준*에 위배되거나, 본사 소재지 인근에서 운영 중인 숙소·사택

*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용 숙소·사택 운영 기준」(21.12., 국토부) 등

2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 정비

①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목적을 달성한 회사의 지

* 기관의 설립 근거 법령 또는 정관상의 명시적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

② 투자손실 확대* 등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회사의 지분

* 기준(안) : (완전자본잠식 or 투자손실이 50% 이상) &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

※ 정비대상 제외 회사 : ①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출자회사,

② 자회사(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

자료: 기획재정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2022. 7. 29.